노사협의회 제도 의의

노사협의회란?

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과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기구

☞ *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될수록 혁신적 인사제도를 많이 수용하고, 혁신적 인사제도의 도입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(삼성경제연구소, 2008.)*

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노사협의회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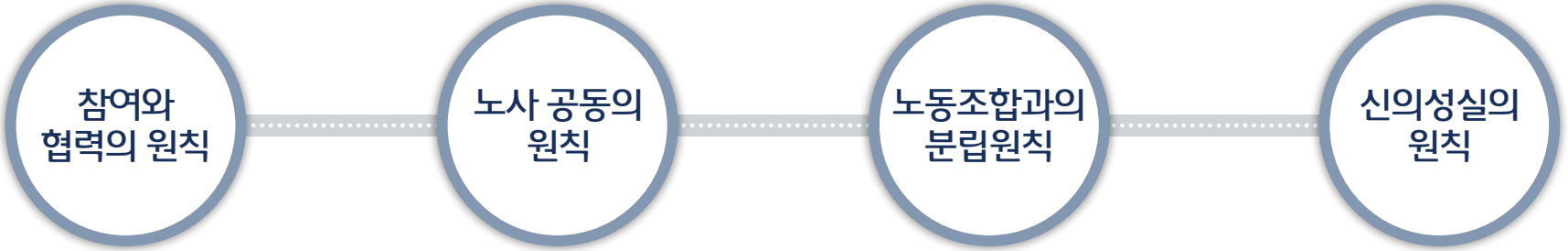

노사협의회 제도 의의

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(노동조합)의 비교

구분	노사협의회	단체교섭
목적	•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	• 근로조건의 유지/개선
대표성	• 전체 근로자를 대표	• 조합원을 대표
배경	• 노조의 조직 여부와 관계 없음 •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	•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•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
당사자	•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	• 노동조합과 사용자
과정	•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•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/의결	•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

노사협의회 제도 의의

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
위원구성	• 노사동수(근로자측, 사용자측) 각각 3인 ~ 10인 이내로 구성(임기 3년)(법 제6조) - 근로자 :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- 사용자 :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
회의개최	•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개최(법 제 12조)하고,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•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•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. 다만, 협의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
회의내용	• 보고사항(경영계획, 생산계획, 인력계획 등 경영정보) (법 제22조) • 협의사항(작업방식, 근로조건, 인사노무제도 등) (법 제20조) • 의결사항(노사협의회규정 제개정, 교육, 사내근로복지 등) (법 제21조)
고충처리제도	•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(3명 이내, 임기 3년) (법 제26조) • 고충사항 접수 시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함 (법 제28조) 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 협의회에서 협의/의결

노사협의회 위원

위원구성 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인 / 총 6인

임 기 • 3년 (연임 및 중임 가능)

사용자위원 •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

근로자위원 • 근로자의 직접 / 비밀 / 무기명 투표로 선출(령 제3조)

[선출절차]

근로자위원 모집공고 » 입후보 (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) » 투표 (온라인 투표) » 선출

다수득표자

[선출계획]

- 모집공고 : 9.22(화) ~ 9.29(화) 17시
- 입후보 등록 마감 및 온라인 투표 : 10.5(월) ~ 10.6(화) 예정
- 선출완료 및 투표결과 공유 : 10.7(수) / 3Q 타운홀 미팅